제95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대상 등(신설) ○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통상 건축주, 이하 ’관리주체‘)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범위를 규정 –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은 제외 –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학교시설은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기부 장관이 고시 ○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용역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○ 관리주체가 성능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 ▶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자격기준(신설) ㅇ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(이하 '관리자')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- 과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- 시행령 [별표 6]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▶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	
2	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금융위원회)	1.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(신설) ㅇ (채권회수 조치 통지 방법)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▲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▲주택 경매 예정 ▲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을 통지할 때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, -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서면을 대체할 수 있으며, - 통지 도달 시점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, 도달 여부 확인 불가 시 「주민등록법」상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의무(제5조) ㅇ (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내용)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시 ▲기한의 이익이 부활 가능하다는 사실 및 그 요건 ▲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▲그 밖에 금융위가 고시하는 사항을 통지(제7조)	1.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주택경매 예정의 통지 방법·내용)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, – ▲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고, 같은 기간 내에 미요청 시 예정대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내용 ▲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하고, – 해당 주택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주택(평가액 6억원 이하)으로서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함(제9조) ○ (양도 시 장래 이자 면제 대상) 채권금융회사등은 ▲손금 산입 채권 ▲연체기간 1년 이상 채권 중 1년 이내 원금과 이자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,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(제10조) ○ (양도 제한 채권) ▲세 번 이상 양도*된 채권 ▲채무확인서 미교부 채권 ▲채권원인서류가 없거나 명의도용,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등 채권·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▲그 밖에 금융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양도 불가(제11조) * 단, ①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, ② 자산유동화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법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한 양도, ③ 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채권은 횟수에서 제외 – 다만, 채무자 보호 등 목적의 공공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이 출자·출연한 회사에는 양도 가능 ○ (양도 예정 통지 내용)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 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▲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고, 양도 예정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 미요청 시 예정대로 양도된다는 내용 ▲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▲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규정(제14조) ○ (양수인 평가 관련 법령) 양수인 평가* 사항 중 '채권 추심 관련 법령 위반 사항'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▲대부업법 ▲신용정보법 ▲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규정(제16조) * 채권금융회사등은 90일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 양도 시 양수인 평가 의무 ○ (채권양도내부기준 세부사항)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 마련 시 채권양도 방식과 그 외 채권관리 방식 간의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비교해야 하고, 법의 목적과 개인금융채무자의 신뢰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, – 채권양도 의사결정 체계 등을 채권양도내부기준에 포함해야 함(제18조)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▶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,제7조,제9조,제10조,제11조, 제14조,제16조,제18조 2.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(신설) ○ (채권 추심 제한)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추심 금지 채권을 규정(제19조) ○ (추심 착수 통지 방법 및 내용)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시 통지 방법으로 ▲전자우편 ▲우편 ▲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▲그 밖에 금융위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, 통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여야 하며, – 통지 시 포함되어야 할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으로 ▲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(관련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화번호 포함) ▲채무조정, 분쟁조정,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법령에서 정한 방어권 행사 방법을 포함 – 그 밖에 통지해야 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추심 대응 필요 사항으로 ▲입금계좌번호, 예금주명 등 입금계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좌 관련 사항 ▲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2에 따른 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을 규정(제20조) ○ (추심연락 제한)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, 추심연락 제한 기간을 '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기간(1회 연장 가능)'으로 규정(제22조) –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하도록 요청 가능(제23조) –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요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심연락 제한에 응할 의무(제23조) * 다만, 추심연락 제한으로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심연락 제한 해제 가능 ○ (채권추심 내부기준 등) 채권추심자가 추심업무 수행 시 따라야 할 채권추심 내부기준 마련 시 고려 사항 및 포함 사항을 규정(제24조) ○ (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)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시 포함사항을 규정하고,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의 총자산 규모 또는 영업수익 기준을 ‘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00억원’으로 규정(제25조) ○ (보호감시인의 업무 등) 보호감시인의 수행업무 및 수행할 수 없는 직무*를 규정하고, 보호감시인은 타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(제25조) * ▲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▲채권추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○ (채권추심회사의 보호감시인 관련 의무)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 임명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– 보호감시인의 자료·정보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,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 관련 사유로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규정(제25조) ○ (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)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의 포함 사항을 규정하고 –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총자산규모 기준을 ‘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’으로 규정(제26조)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처분)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바, 처분 시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(제27조) ○ (손해배상 보장 최소기준 및 보증금 지급)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 이행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, – 조치의 최소기준으로 채권추심회사는 5억원,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5천만원으로 정하고, 보증금 지급 절차를 규정(제43조) ▶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,제20조,제22조,제23조,제24조,제25조,제26조,제27조,제43조 3.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시 준수사항(신설) ○ (추심 위탁의 통지 방법·내용) 채권금융회사 등이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 서면(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 포함) 또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 시 포함 사항 규정(제29조)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추심 위탁 계약 필요사항)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(제30조) ○ (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 발견시 채권금융회사 등의 조치)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, –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 내용 등을 7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 하고 – 보고 포함 사항에 ▲위법행위 내용 ▲적용법률 규정 ▲위반 횟수 ▲시정 요구내용 ▲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– 채권금금융회사는 당해 채권추심회사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하지 않거나 계약상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함 (제31조) ○ (추심 위탁 내부기준) 채권금융회사등이 추심위탁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추심 위탁 내부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(제32조) ▶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,제30조,제31조,제32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채무조정시 준수사항(신설) ○ (채무조정 안내 사항) 채권금융회사등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규정(제33조) ○ (채무조정 내부기준)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운영하여야 하며,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 내부기준 포함사항을 규정)제34조·제35조) ○ (채무조정 처리)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 –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 통지 시 개인금융채무자와 합의된 방법중 1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하고, 채무조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–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·개인회생 또는 파산,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른 채무조정 등 개인금융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안내해야 함 ▶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,제34조제35조제39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등의 공표(신설) ○ (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감독·검사) 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의 포함사항 및 제출시기를 규정 – 업무보고서에는 ▲회사의 개황 ▲재무사항 ▲채권추심 업무실적 등 업무의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하며, – 채권추심회사는 매 분기별로 분기별 마지막 달의 익월 말일까지,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별 말일의 익월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보고서 제출(제42조) ○ (행정처분 등의 공표) 금융위원회가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, – 공표 방법은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, 행정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사실을 행정처분 등을 공표한 기간 이상 공개(제44조) ▶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,제44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단축(강화) ㅇ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중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상 규정 – 시행규칙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대상 항공기에 적용 ▶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	1.비중요
4	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· 긴급도 분류기준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시행주체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(신설) ㅇ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· 긴급도 분류기준(Pre-KTAS) 도입에 따라,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할 의무 부여 ▶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· 긴급도 분류기준 제3조 2.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기록 의무(신설) ㅇ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에 응급환자 분류 결과(환자 기본정보, 분류내용 및 분류등급)를 분류 대장에 기록할 의무 부여 ▶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· 긴급도 분류기준 제8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비응급환자 또는 경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(강화) ㅇ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일부 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상향 – ▲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·권역외상·전문응급·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시, ▲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·권역외상·전문응급의료센터 이용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50~60%에서 90%로 상향 조정 * 단, 입원진료, 격리입원,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진료·검사, 원격의료, 회송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을 적용하지 않음 ▶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	1.중요
6	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(신설)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단체들의 체육지도자들은 매 2년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, 그 대상자에 운동경기부도 포함시켜 모든 체육지도자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▶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 ○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최대배관길이(방출압력 · 양 · 시간 고려) 및 수직형 배관의 최대수직높이 등 관련 방출시험의 세부 시험방법 신설, 설계사항 검증횟수 강화(1회 → 2회 이상) 등 ▶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	1.중요